##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89

발의연월일: 2023. 6. 16.

발 의 자:홍석준·김용판·박덕흠

박대수 · 지성호 · 한무경

백종헌・金炳旭・김영식

엄태영 · 김예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고, 기소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의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상공개의 대상에 피고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법률 제 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의자의"를 각각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의자가"를 "피의자 및 피고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의자의 재범방지"를 "재범방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피의자가"를 "피의자 및 피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의자의"를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u>피의자의</u> 얼굴 등 공개)	제8조의2( <u>피의자 및 피고인의</u> 얼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굴 등 공개)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	
정강력범죄사건의 <u>피의자의</u> 얼	
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	피의자 및 피고인의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의자가</u> 그 죄를 범하였다	2. <u>피의자 및 피고인이</u>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u>피의자</u>	3 <u>재범방</u>
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u> </u>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_
4. <u>피의자가</u> 「청소년 보호법」	4. <u>피의자 및 피고인이</u>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	②
에는 <u>피의자의</u> 인권을 고려하	<u>피의자 및 피고인의</u>
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